

인천지방법원 2020. 7. 15 선고 2020가단5609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7. 15.

주 문

1. 피고는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/11 지분에 관하여,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 D, E,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/11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8. 11. 5. 접수 제357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20. 4. 27.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[다만, 망 G의 상속인들인 원고(선정당사자)와 선정자 D, E, F, C이 각 상속지분에 따라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선택한다]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 판결)

판사강인혜

별지